

7 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 다음은 우리 구가 2019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 보장 (081)	취약계층 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207,837	46,830	42,855	28,811	84,475	2,810	2,057	0	0
국 비	146,175	41,633	20,211	15,856	67,745	730	0	0	0
시·도비	47,489	3,483	20,043	10,112	10,963	1,057	1,831	0	0
시·군·구비	14,173	1,714	2,601	2,843	5,767	1,023	226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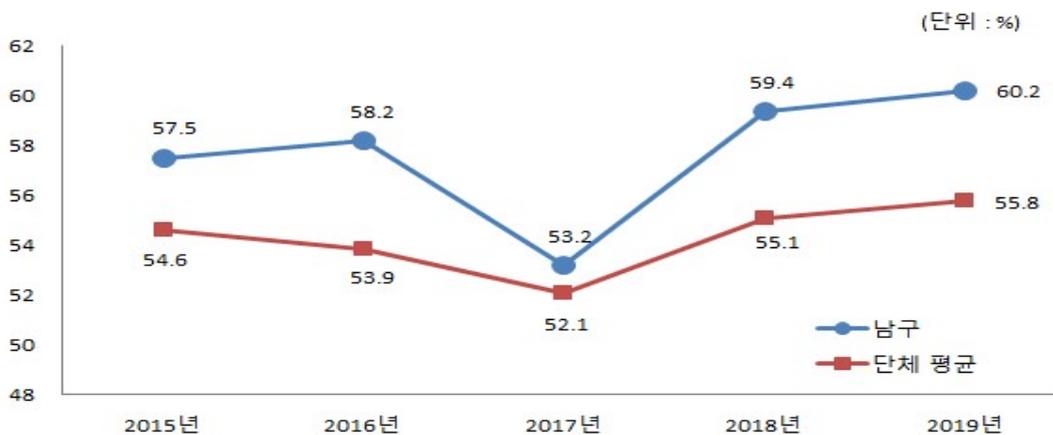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A)	237,854	268,310	305,872	304,385	345,180
사회복지분야(B)	136,696	156,230	162,655	180,800	207,838
사회복지분야비율(B/A)	57.47	58.23	53.18	59.4	60.21
인구수 (C)	160,852	156,433	152,845	150,501	148,113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850	999	1,064	1,201	1,40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노인·청소년 사회복지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17,861백만원, 27%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 ☐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 우리 구에서 민간(개인 또는 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346,576	62,436	18.02	
민간경상보조 (307-02)		3,669	1.06	
민간단체운영비보조(307-03)		1,324	0.38	
민간행사보조 (307-04)		752	0.22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37,764	10.9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8,926	5.46	
민간자본보조 (402-01)		0	0	

-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지원액 등 집행내역은 별지로 작성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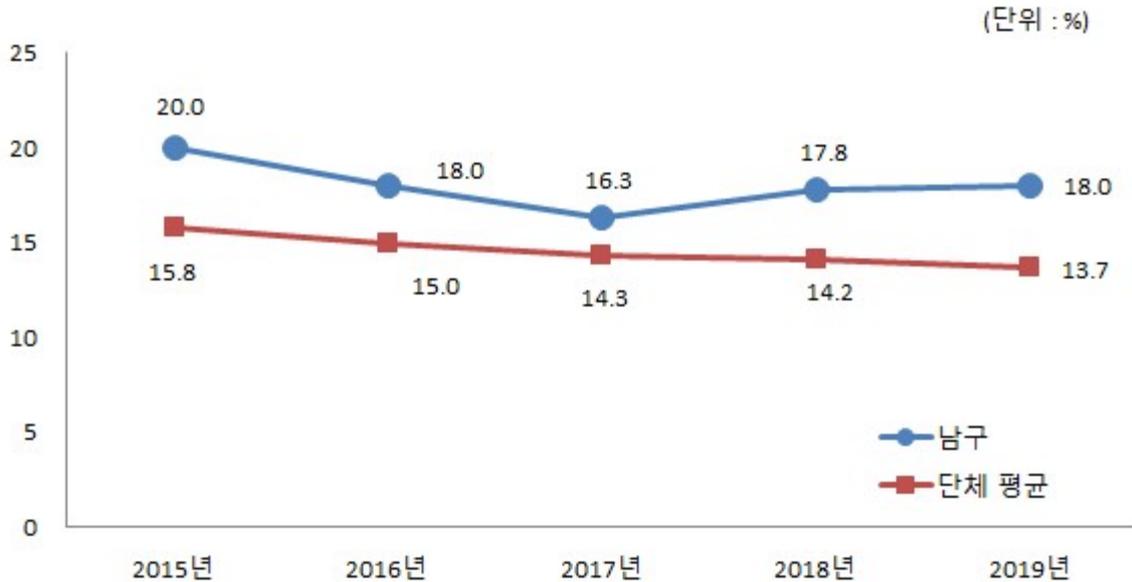
❖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237,854	268,310	305,872	308,889	346,576
지방보조금(민간)	47,559	48,353	49,921	54,839	62,436
비율	19.99	18.02	16.32	17.75	18.02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별지로 작성하였습니다.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없습니다.

-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①, ②, ③은 법 시행 이전 것도 작성 대상이며 ④는 법 시행 이후 것만 작성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구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없습니다.

7-6. 행사·축제경비

- 다음은 우리 구가 2019년 한 해 동안 구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45,180	1,620	0.47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9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237,854	268,310	305,872	304,385	345,180
행사·축제경비	308	671	388	1,211	1,620
비율	0.13	0.25	0.13	0.40	0.47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